

# 의 결



ACNHC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226호

의 안 명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대상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4개 기초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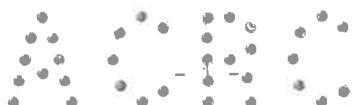
의 결 일 2023. 2. 28.

### 주 문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안양시장, 성남시장, 청주시장, 김해시장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2월 28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김 태 규

위 원 정 승 윤

위 원 박 상 희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손 난 주

위 원 최 정 뮤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육

A G E E



---

##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혁신 제도개선 –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

---

2023. 2.



## 목 차

I. 추진개요 .....	1
II. 제도현황 .....	2
III. 문제점 .....	4
1.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원기준 불합리 .....	4
2. 비현실적인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 인정기준 .....	7
IV. 개선방안 .....	11
1.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원기준 합리화 .....	11
2.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범위 확대 .....	12
V. 조치사항 .....	14
【참고】 관련 법령 등 .....	15



# I. 추진개요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국정과제 :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 과제발굴 : 국민신문고 민원, 언론보도 등

## □ 추진배경

- 국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혁신은 새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제도개선 추진 필요

### 대통령 말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것으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음”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 '22.8.17.)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과제 발굴
  - 차량 기술향상 등으로 기존 자동차 정비업체의 운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특히 영세한 정비업체들의 경우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
  -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 관련 규정으로 인한 소규모 업체의 인건비 부담 문제 등 현실을 반영한 개선 요구
-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제도개선 추진

■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정비요원이 2명이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이 가능한데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지방에서 3명을 구하라고 하니 불합리함. 가뜩이나 코로나와 높은 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까지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 □ 추진경과

- '22. 12월 ~ '23. 1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23. 1월 ~ '23. 2월 기관협의 및 안전상정

## II. 제도현황

### □ 자동차정비업

- (정 의)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종 류) 정비작업 범위 등에 따라 ① 자동차 종합정비업, ②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③ 자동차 전문정비업, ④ 원동기 전문정비업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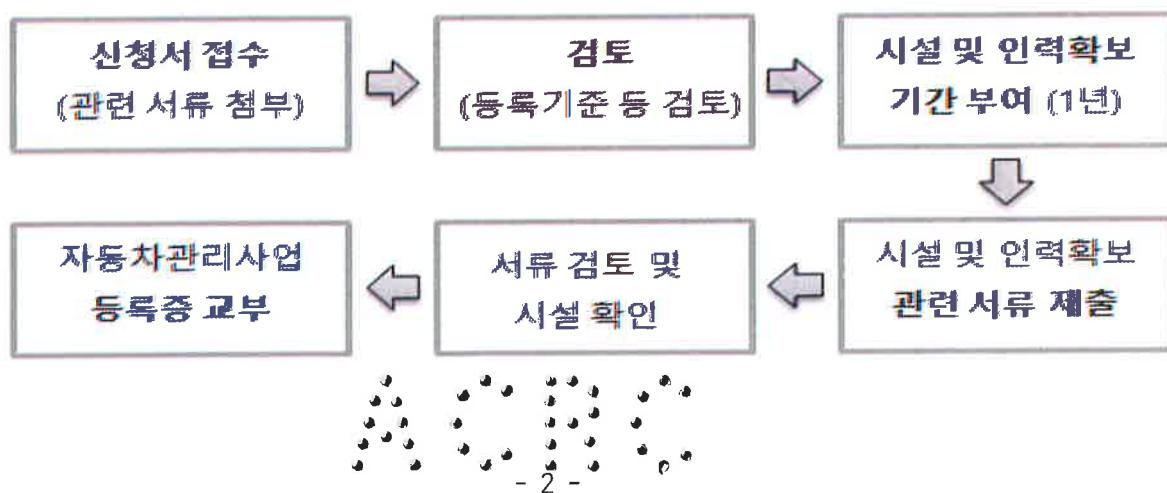
#### < 자동차 정비업 종류 및 정비작업 범위 >

종류	취급대상*	작업범위
자동차 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	점검 · 정비 및 튜닝작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점검 · 정비 및 튜닝작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작업 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 · 정비 및 튜닝
원동기 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	재생정비 및 튜닝

\* 자동차 종류 : (규모별) 경형자동차, 소형자동차,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유형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등록절차)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비업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

#### < 자동차 정비업 등록절차 >



- (등록기준) 시설·장비 요건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력·자격요건 등 추가사항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자동차 관리법 (국토교통부)】**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생략)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별표21의2)】**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

종류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 포함 면적)	총족시설·장비수*
① 자동차종합정비업	1,000㎡ 이상	16건
②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400㎡ 이상	16건
③ 자동차전문정비업	50㎡ 이상	9건
④ 원동기전문정비업	300㎡ 이상	14건

\* 정비작업 범위에 따라 세부 시설·장비, 정비·검사기구, 시험·측정기 등 세부종류 차이

- (등록규모) 자동차 정비사업체는 36,26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정비업 종사자 수는 92,977명 ('22.9월 기준)

**< 자동차 정비사업 현황 >**

(단위 : 개, 명)

구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계
2022. 9월	사업체 수	4,416	2,204	29,415	233
	종사자 수	36,761	13,092	42,341	783
2021.12월	사업체 수	4,473	2,205	29,540	236
	종사자 수	36,948	13,347	42,671	836
2020.12월	사업체 수	4,319	2,174	29,463	233
	종사자 수	38,850	12,942	43,763	832
2019.12월	사업체 수	4,248	2,101	29,276	222
	종사자 수	39,477	13,220	43,676	907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제공 자료

-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조례」(광역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 시) 등

### III. 문제점

1

####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원기준 불합리

- 지자체별로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비요원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
  -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대상·시설규모 차이(2배 이상) 등에도 불구하고 확보해야하는 정비요원 인원수가 동일하여 불합리

##### <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비교 >

구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시설면적	1,000㎡이상	400㎡이상
정비대상	모든 종류의 자동차 (경형·소형·중형·대형의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작업범위	교환 및 탈부착, 모든 종류의 판금·도장 작업 등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교환 및 탈부착, 일부 종류의 판금·도장 작업 등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 시설면적이나 작업범위가 좁은 '자동차전문정비업'에 대해서만 정비요원 인원수를 차등하게 규정

##### < 지자체별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한 정비요원 최소 등록인원 기준>

구분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비고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인원 동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차등							

('22.12월, 지자체별 자동차 정비업 등록 관련 조례 권익위 실태조사)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고용인원 기준이 동일하여 인건비 등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민원 발생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던 중 정비업자 고용인원이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등록인원이 2명이면 가능한데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지방에서 3명을 구하라고 하니 불합리함. 또한 사업 초반인 상황에 자금 조달도 어렵고 높은 금리와 코로나로 어려운데 고용인원 1명을 더 채용하라니 인건비까지 부담이 너무 가중됨. 오히려 이런 규정이 자격증 보유자 명의만 대여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고 개선이 필요함 (국민신문고 민원, '22.12월)

- 실제 운영 규모 대비 인원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정비요원 등록 이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 인력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업계 현실을 반영한 현실화 요구

- 대구시 자동차정비업 현황을 살펴보면 '17.6월 기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평균 종사자 수는 6.8명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 평균 종사자 수인 15.1명의 45%에 불과한 실정 등을 고려하여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필요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심사보고서, '17.9월)*
  - '22.10월 기준 서울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업체 307개 중 정비인력 보유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는 49%(150개)이고, 이 중 자격보유자가 2명 이하인 경우는 45.6%(140개) 수준  
*(권익위 실태조사, '23.1월)*
  - '19년 OO시 자동차정비업 점검시 정비요원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되는 사례가 점검대상 125개소 중 15건(12%) 발생. 현실적이지 못한 인력 기준에 따른 적발 사례 증가로 관련 조례 현실화 필요성 대두  
*(권익위 실태조사, '23.1월)*
  - 지방 소도시의 경우 대규모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정비소는 최소한의 등록 인원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실제로 운영 중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인력 유지 및 인건비 지급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등록인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등록 인원만을 충족시켜놓는 경우 등의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함.  
*(권익위 실태조사, '23.1월)*

-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sup>\*</sup>에서는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합리화를 위하여 정비요원 최소 등록 인원수를 종류에 따라 차등 개정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 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업계 운영 현실 등을 고려하여 관할 광역자치단체와는 다른 기준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는 별도 조례 제정 가능 (자동차관리법 제5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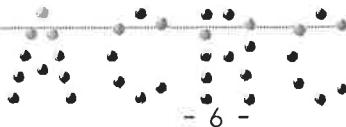
#### < 광역·기초자치단체 조례 등록기준(인원) 비교 >

구분	충청북도 (광역)	청주시 (기초)	경기도 (광역)	성남시 (기초)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3명	3명	3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2명	3명	2명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1명	1명	1명

-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기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 및 혼란 우려로 기준 정비 필요

- A도 소속의 ○○시는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인원수를 차등하게 규정하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A도 내 ○○군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수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력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업계 조합에서는 A도 조례의 일괄적인 기준 개정을 요구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3.1월)



## 2

## 비현실적인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 인정기준

-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정비요원의 자격기준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 인정범위가 한정적
  - 자동차분야 국가기술자격은 '자동차 정비' 외에도 '자동차 보수 도장', '자동차 차체수리' 분야 등이 있으나 해당 자격은 정비요원 자격요건으로 불인정

### 【자동차 정비책임자】

자동차 점검 ·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정비책임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자격 필요

###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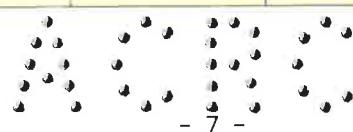
손상된 자동차 보디와 차체 패널을 수리 및 교환한 후 도료의 조색과 도장작업을 통해 본래의 차체 형상과 색상으로 원상회복 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

### 【자동차 차체수리 기능사】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 차체가 손상된 경우, 차체수리용 공구 등을 사용하여 일반 자동차의 차체변경 수리작업 및 손상된 차체를 복구시켜 도장 및 이상 부품 교환, 수리 직무 수행

### < 국가기술자격법 [별표2] - 자동차 분야 국가기술자격 >

종직무분야	기술 · 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					자동차 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 차체수리



## ○ 최근 차량 기술 향상으로 자동차의 기능상 고장 수리 감소 추세

- 반면 교통사고 증가 등에 따른 차량 외부 차체 정비(판금) 및 도장 수리 등 정비수요 증가로 해당 분야 전문기술 인력확보 필요

■ 자동차 일반정비 및 사고차 복원수리 정비를 하는 자동차 종합·소형 정비업은 사업 특성상 차체정비(판금)과 도장작업이 전체 사업의 약 80% 이상의 비중 차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정책건의백서 건의사항 중 발췌, '21년)*

■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차체정비 및 자동차 도장 작업이 실제 정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나, 현행 조례에서는 정비업 인력기준에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설인력 기준에 대한 신고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심사보고서, '17년)*

- '정비' 분야 자격증 보유자를 정비요원으로 우선 고용해야함에 따라 판금·도장을 위한 전문인력의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사실상 소규모 업체는 추가 채용 불가
- 이에 무자격자가 자동차 차체수리나 보수도장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등의 차량 안전사고 등 위험

■ 자동차 차체수리, 보수도장 분야 기능인력은 자격증을 보유한다 해도 인력 기준에서 제외되어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보수 부담 등으로 실질적으로 종합전문정비업, 소형전문정비업 정비공장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자격자가 자동차를 분해, 조립, 절단, 용접, 프레임 교정 등 수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언론보도, '19.12월)*

■ 자동차 보수도장 및 차체수리(판금)의 경우 국가에서 국가자격 항목을 개설하고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부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무자격자들이 대부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보수도장이나 차체수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전문지식 없이 무자격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자동차 보수 및 수리 후 보장 되어야 할 최소한 품질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한 분란 등이 현장에서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국민신문고 민원, '18.8월)*

- 대기업(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비해 소규모 업체들은 도색, 판금 등 분야에 대한 수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자격증이 미인정되어 사업 운영 곤란

■ 실질적으로 차에 대한 큰 결함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이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으로 수리를 맡기려 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소규모 업체들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교통사고 등에 따른 외관 복원을 위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도색, 판금 등의 작업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차체수리, 보수도장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아 정비 자격증 취득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실상 추가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업장 현실을 반영한 개선 필요

(권익위 실태조사, '23.1월)

- 상위 법령(자동차관리법 등)에 규정되지 않은 지자체 조례의 정비업 등록 관련 규제조건(인원, 자격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존재

※ 광주광역시의 경우 조례에 자동차 정비업 등록 인원, 정비요원 자격조건 기준 없음

■ 상위법령에서는 정비책임자 자격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원이나 자격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시각도 있음. 다만, 자동차 정비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최소 인원, 자격 요건 등 규제 조건 전면적인 완화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권익위 실태조사, '23.1월)

- 차체수리·보수도장 자격증 보유자는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정비요원 인정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 제기

#### < 자동차 정비·차체수리·보수도장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취득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75,535	1,498	1,557	1,496	1,360	1,682	83,128
	기능사	527,196	9,354	8,422	7,687	6,169	6,086	564,914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12,578	1,095	1,148	1,135	793	806	17,555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9,761	1,420	1,342	1,491	1,069	1,160	16,243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자격검정통계 현황자료

- 자동차 보수도장 및 차체수리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면 현장에서는 “그냥 현장에서 배워서 하면 된다. 쓸데없다”는 인식이 강하여 자격증 보유자는 전무한 실정임. 자격 취득에 대한 동기도 없어지는 실정으로 자동차 보수도장 및 차체수리 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한 국가자격취득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 민원, '18.8월)
- 자동차정비업 정비인력 기준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인정해주고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 보수도장 기능사를 정비요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해당 자격증 존치에 대한 의문이 듬 (국민신문고 민원, '16.9월)
- 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이 당연히 자동차 정비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비가 아니라고 정비요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국민신문고 민원, '15.7월)

- 서울시 등에서는 정비업계의 운영 현실 등을 반영하여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사’를 정비요원 자격으로 인정
  - 다만, 안전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 정비사’ 필수인원을 우선 확보하되 일정 비율 이상의 추가인력에 대하여 해당 자격 보유자 인정

####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대한 조례】

-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생략)
- (심사보고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책임자 등 최소한의 인력은 안전분야인 “자동차 정비인력”으로 우선 확보하되,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 자격인력을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정비업계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자동차 외관수리 수요에 대응 및 품질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

## IV. 개선방안

1

###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원기준 합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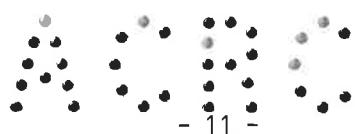
- 자동차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업 등록을 위한 정비요원 최소 인원 기준을 차등하게 개정  
⇒ 각 지자체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등 개정

< 개정(안) 예시 >

#### 개선안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 2

##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범위 확대

- 정비요원 자격 인정기준을 '자동차 차체수리·자동차 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 다만, 안전화보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 분야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필수 확보
- 판금·도장수리 등 특화분야 정비운영 등으로 필요할 경우 자동차 차체수리·보수도장 자격증 보유자도 일부 포함 가능하도록 개정

⇒ 각 지자체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등 개정

※ 개선안은 예시일 뿐이며, 적용대상 범위(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등) 및 일정 비율 이상에 적용하는 등 세부 적용 방법은 지자체별 실정에 맞도록 개정 (P.13 개정 사례 참고)

< 개정(안) 예시 >

### 개선안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 수의 1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 (사례 1)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대한 조례**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 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 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 (사례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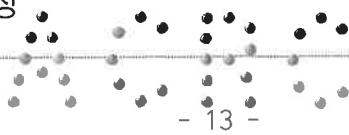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생략)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 (사례 3)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 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 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
  -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인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인 이상인 경우 정비 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인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인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인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인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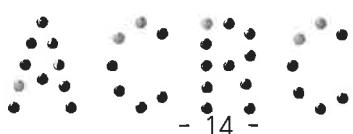
## V. 조치사항

###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17개) 및 기초자치단체(4개)

※ 별도 조례 제정 기초자치단체(4개) : 안양시(경기), 성남시(경기), 김해시(경남), 청주시(충북)

### □ 조치내용 및 조치기한

세부과제명	조치내용	조치기한
1.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원기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동차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업 등록을 위한 정비요원 최소 인원 기준을 차등하게 개정 ⇒ 각 지자체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등 개정</li></ul>	'24.3월
2.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비요원 자격 인정기준을 '자동차 차체수리·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 각 지자체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등 개정</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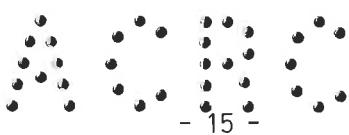
## 참 고      관련 법령 등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m <sup>2</sup> 이상	400m <sup>2</sup> 이상	50m <sup>2</sup> 이상	300m <sup>2</sup> 이상
나. 시설·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2) 체인부록(1톤 이상)	-	-	○
	3) 도장(塗裝)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다. 정비검사기구	1) 제동시험기	○	○	-
	2) 전조등시험기	○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
	4) 속도계시험기	○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7) 매연측정기	○	○	○
라. 시험·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2) 압력측정기	○	○	-
	3) 회전반경측정기	○	○	○
	4) 휠밸런스	○	○	○
	5) 토인측정기	○	○	○
	6) 캠버캐스터측정기	○	○	○
	7) 엔진종합시험기	-	-	-
	8) 노즐시험기	-	-	○
마. 공작 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	-
	2) 실린더호닝머신	-	-	-
	3) 밸브 시트 그라인더(연마기)	-	-	-
	4) 밸브시트카터	-	-	-
	5) 크랭크연마기	-	-	-

- 주) 1. 둘 이상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제1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장비 등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본입니다.

2023. 3. 2.

국민권익위원회



ACBIC